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연금보험

2. 보험의 구성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 연금	보증기간부 (정액형)	개인계약 (10년보증/20년보증)
		부부계약 (10년보증/20년보증)
보증금액부		

※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보험 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Y세(45세 ~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5년 · 10년 · 15년 · 20년)까지
	상속연금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4.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 개시나이(Y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5년, 7년, 10년	45세 ~ 80세	만15세 ~ (Y-15)세
15년, 20년		만15세 ~ (Y-납입기간)세

- ※ 다만, 5년납의 경우 최고가입나이는 60세
-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8세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최저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

5. 보험료 납입주기

- 가. 기본보험료 : 월납
- 나.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납입보험료는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기본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 ‘나’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 의 한도를 적용한다.

8.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약관 제3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 인출한 경우 9.연금개시 축하 보너스에 관한 사항, 약관 제6조(용어의 정의) 제6항에서 정한 연금개시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begin{aligned} & \text{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 \times \frac{\text{인출직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text{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직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 &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 \end{aligned}$$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나’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한다.

9. 연금개시 축하 보너스에 관한 사항

연금개시 축하 보너스는 연금지급 개시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의 1%를 말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10.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 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 이라 함)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나. ‘가’ 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다만,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

는 주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주보험 연금계약 적립액에 투입(수금비 제외)되어 적립된다. 또한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금지급개시나이가 80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주계약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이하 동일]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의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이하 동일)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시에 공제한다.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 (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 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 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11.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

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용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할인 조건	할인율
기본보험료 30만원이상 ~ 50만원 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
기본보험료 50만원이상 ~ 100만원 미만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7%
기본보험료 100만원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0%

마.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 × 12 × MIN [납입기간, 10]

바.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